

## 4. 검수규정 신규대비표

현행 규정	개정안	수정 이유
<p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의 계약에 의하여 조달하는 물품의 검수절차와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의 계약에 의하여 <b>구매하는 물품 및 공사, 용역의 검수절차</b>와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문구 수정 및 현행 규정에서 물품의 검수로 한정되어 있어 공사, 용역에 대한 내용 추가</p>
<p>제3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"검수"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납품되는 물품이 규격, 시방서, 설계서 기타계약 조항과의 합치여부를 검사 시험하고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전과정을 말하며, 물품의 모델, 사양,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검수부서의 <u>현품검수와 물품의 인수와 설치 및 성능을 검증하는 현업부서의 성능검수를 포함한다.</u></p> <p>(신설)</p> <p>3. "검수자"라 함은 현품을 검수 하는 자로서, 전담검수부서 소속의 전담검수자와 현업부서 소속의 현업검수자가 있다.</p> <p>4. "인수자"라 함은 물품을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5. "입고자"라 함은 물품의 <u>현품검수와 인수여부, 성능검수 등 검수의 전과정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.</u></p> <p>6. "확인자"라 함은 예산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를 말하며 검수자, 인수자, 입고자의 판정 및 처리 등 검수의 전 과정을 통제 및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.</p> <p>7. "납품기일"이라 함은 계약서상에 명기된 물품, 공사 등이 지정된 장소까지 <u>반입되어 소정의 검수를 완료 하는 일자</u>를 말한다.</p>	<p>제3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현행유지)</p> <p>2. "검수"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납품되는 물품이 규격, 시방서, 설계서 기타계약 조항과의 합치여부를 검수하고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<b>전과정을 말한다.</b></p> <p>3. "<b>현품검수</b>"라 함은 <b>물품의 모델, 사양, 수량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.</b></p> <p>4. "<b>입고</b>"는 <b>물품의 인수와 설치 및 성능을 검증하는 현업부서의 성능검수를 말한다.</b></p> <p>5. "<b>서비스 입고</b>"는 <b>현업부서에서 공사, 용역의 적정이행여부를 판단 및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.</b></p> <p>6. "검수자"라 함은 <u>현품검수를 하는 자로서</u>, 전담검수부서 소속의 전담검수자와 현업부서 소속의 현업검수자가 있다.</p> <p>(삭제)</p> <p>7. "입고자"라 함은 <b>입고와 서비스 입고를 하는 자를 말한다.</b></p> <p>8. "확인자"라 함은 예산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 등을 말하며 <b>입고자의 판정 및 처리 전 과정을 통제 및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.</b></p> <p>9. "납품기일"이라 함은 계약서상에 명기된 물품, 공사 등이 지정된 장소까지 <b>반입되는 일자</b>를 말한다.</p>	<p>현 검수절차 반영</p> <p>- "검수", "현품검수", "입고" 정의 분리</p> <p>- 공사, 용역에 대한 "서비스입고" 정의 명시</p> <p>- "검수자" 및 "입고자"에 대한 정의 명료화</p> <p>- "확인자"의 정의 명료화 : 확인자는 현품검수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</p> <p>- 납품기일 개념 재정의</p>

<p>8. ~ 9. (생략)  10. "인수일자"라 함은 검수부서가 검수한 물품에 대해 계약 업체로부터 인수자가 물품을 전달받은 일자를 말한다.</p>	<p>10. ~ 11. (현행유지)  <b>(삭제)</b></p>	<p>-인수 개념 삭제(불필요)</p>
<p>제5조(검수대상) 대학의 검수대상은 다음과 같다.  1. 전담검수 : 구매요청건 전부, 엔투비 구매건(3백만원 초과 /건당)  2. 현업검수 : 소액구매(자산성), 공사, 용역, 단가계약 (신설)</p>	<p>제5조(검수대상) ①대학의 검수대상은 다음과 같다. <b>단, 용역 및 공사는 서비스 입고로 처리한다.</b>  1. 전담검수 : 구매요청건  2. 현업검수 : 소액구매(자산), 단가계약  <b>② 엔투비 검수건에 대해서는 전담검수자가 비정기적 샘플링 검수를 실시한다(신설)</b></p>	<p>- 용역, 공사에 대한 검수처리(현업검수가 아닌) 서비스 입고로 진행  - 엔투비구매건은 엔투비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개선 품의 (엔투비 구매서비스 개선안 (구매관재팀-601, 2017.07.28))</p>
<p>제6조(검수원칙) ① 각 물품에 대한 검수는 검수자로 임명된 자가 검수하여야 한다.  ② 검수는 검수자가 현품검수 후 확인자가 인수하여 성능검수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예외적으로 자체적으로 검수가 어렵거나 성능확인이 불가한 경우 제3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검수할 수 있다.  ③ (생략)</p>	<p>제6조(검수원칙) ① 각 물품에 대한 <b>현품검수</b>는 검수자로 임명된 자가 검수하여야 한다.  ② 검수는 검수자가 현품검수 후 <b>입고자가</b> 성능검수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예외적으로 자체적으로 검수가 어렵거나 성능확인이 불가한 경우 제3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검수할 수 있다.  ③ (생략)</p>	<p>- 제3조 정의 변경에 따른 문구 명료화  - 인수 개념 삭제</p>
<p>제7조(담당자 임면) ① 전담검수자는 검수총괄 부서장이 임명하고 현업검수자는 현업부서장이 검수자로 임명한자가 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u>다만, 자산담당자를 검수자로 할 수 없는 부서에서는 검수총괄부서와 협의하여 부서장에게 별도의 검수자를 임명의뢰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7조(담당자 임면) ① 전담검수자는 검수총괄 부서장이 임명하고 현업검수자는 현업부서장이 검수자로 임명한자가 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p>	<p>업무분장에 대한 불명확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삭제(단서규정에 따르면 자산담당자가 검수자를 겸임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)</p>
<p>제8조(검수책임) ①검수자는 계약서, 납품명세서 등에 의거 물품의 모델, 사양, 수량 등에 대하여 현품검수 할 책임을 진다.  ② 확인자는 현품검수된 물품을 인수하여 성능검수를 실시</p>	<p>제8조(검수 책임) ①검수자는 계약서, 납품명세서 등에 의거 물품의 모델, 사양, 수량 등에 대하여 현품검수 할 책임을 진다.</p>	

<p>하며, 검수 최종승인에 대한 책임을 진다.</p> <p>③ 입고자는 납품명세서, 성능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확인자에게 최종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④ 검수자 또는 확인자가 계약위반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.</p>	<p>② 입고자는 납품명세서, 성능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확인자에게 최종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<b>③ 확인자는 입고자의 판정 및 처리 전 과정을 확인하고 입고 최종승인에 대한 책임을 진다.</b></p> <p>④ 검수자 또는 확인자가 계약위반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 제8호에 따른 확인자 업무 범위 명료화</p>
<p>제12조(검수기간) ① (생략)</p> <p>② 확인자는 납품된 물품에 대해 납기일내에 성능확인을 하여야 하며 납기일 이후 성능확인시 성능확인 지연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입고자는 납품명세서, 성능확인서에 의거 즉시 입고처리하여야 한다</p>	<p>제12조(검수기간) ① (현행유지)</p> <p><b>② (삭제)</b></p> <p>③ 입고자는 납품명세서, 성능확인서에 의거 <b>신속히</b> 입고처리 하여야 한다</p>	<p>현 검수절차 반영 (납기일내 성능확인 불가)</p>
<p>제14조(검수준비) 납품자는 검수자 또는 확인자가 요청하는 자료 및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.</p>	<p>제14조(검수준비) 납품자는 검수자 또는 <b>확인자 및 입고자</b>가 요청하는 자료 및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.</p>	<p>제3조 정의 변경에 따른 문구 명료화(입고자 반영)</p>
<p>제16조(검수절차) 검수절차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물품별 검사순위 결정</li> <li>2. 수검품의 수량점검</li> <li>3. 계약서, 사양서 내용 기준 수검품 확인</li> <li>4. 필요시 검사, 시험, 채취, 조사 등 진행</li> <li>5. 합격, 불합격 판정</li> <li>6. <u>납품명세서, 검수조사서</u> 처리</li> <li>7. <u>확인자 물품 입고 확인</u> 및 성능 등 확인</li> <li>8. <u>입고자 납품명세서, 성능확인서</u> 확인 및 입고 처리</li> </ol>	<p>제16조(검수절차) 검수절차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물품별 검사순위 결정</li> <li>2. 수검품의 수량점검</li> <li>3. 계약서, 사양서 내용 기준 수검품 확인</li> <li>4. 필요시 검사, 시험, 채취, 조사 등 진행</li> <li>5. 합격, 불합격 판정</li> <li>6. <b>납품명세서 처리</b></li> <li>7. <b>물품 입고</b> 확인 및 성능 등 확인</li> <li>8. <b>납품명세서, 성능확인서</b> 확인 및 입고 처리</li> </ol>	<p>현 검수절차 반영 (6호의 검수조사서는 운영하지 않음 7호,8호는 입고절차이므로 확인자와 입고자 명시할 필요가 없음.)</p>

<p>제19조(이력관리) ① <u>계약담당부서는 업체별 납품실적에 대한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.</u>          ② <u>납품실적이 불량한 업체에 대하여 계약담당부서는 일정 기간 동안 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9조(이력관리) <b>(삭제)</b></p>	<p>공급사 관리지침 규정 8조와 중복되어 삭제</p>
<p>제22조(표본추출검사)③ <u>검수자는 샘플을 채취하고자 할 때에는 납품자 입회하에 채취한 샘플에 상호 날인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22조(표본추출검사) ③ <b>검수자 및 입고자</b>는 샘플을 채취하고자 할 때에는 납품자 입회하에 채취한 샘플에 상호 날인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 정의 변경에 따른 문구 명료화(입고자 반영)</p>
<p>제30조(변경판정) ①<u>검수담당부서장이 검수판정과정 및 그 결과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판정을 변경할 수 있다.</u>          1. <u>검수과정에 하자가 있을 때</u>          2. <u>감가한계를 초과할 때</u>          3. <u>하자가 극히 경미하여 용이하게 보완할 수 있을 때</u>          4. <u>사용에 지장이 없고 수요가 긴급할 때</u>          5. <u>기타 특히 필요한 때</u>          ② <u>검수담당부서장이 판정을 변경한 때에는 그 판정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</u></p>	<p>제30조(변경판정) <b>(삭제)</b></p>	<p>현 검수절차 반영 (부서장의 재검수 없음)</p>
<p><u>별표 검수절차</u></p>	<p><b>별표 검수절차(삭제)</b></p>	<p>규정에서 다루어야할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 업무메뉴얼 등에서 다루어져야하므로 삭제</p>
	<p><b>부 칙</b></p> <p><b>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</b></p>	